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5

발의연월일: 2024. 6. 20.

발 의 자: 김선교·최수진·김상훈

박충권 · 김위상 · 이헌승

구자근 · 김성원 · 김예지

강선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 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 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
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 녀의 연령을 만 12세(또는 초등학교 6학년)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 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유연한 사용을 위해 최소 사용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축소하며,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 함(안 제19조제1항, 제19조의2제1항,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, 제1 9조의5제1항)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본문 중 "만 8세"를 "12세"로, "2학년"을 "6학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1년"을 "2년"으로 한다.

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"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"를 "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(이하 "육아기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1년"을 "2년"으로 한다.

제19조의4제1항 전단 중 "2회"를 "3회"로 한다.

제19조의4제2항 후단 중 "3개월"을 각각 "1개월"로 한다.

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만 8세"를 "12세"로, "2학년"을 "6학년"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중 "국가는"을 "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, 제1

9조의2,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거나 실시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	제19조(육아휴직) ①
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	
보호하거나 근로자가 <u>만 8세</u>	<u>12세</u>
이하 또는 초등학교 <u>2학년</u> 이	<u>6</u> 학년
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	
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	
위하여 휴직(이하 "육아휴직"이	
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	
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	
그러하지 아니하다.	
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<u>1년</u> 이	② <u>2년</u>
내로 한다.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	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<u>만 8세</u>	① <u>12</u> **
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	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
<u>하</u>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	<u>하(이하 "육아기"라 한다)</u>
근로시간의 단축(이하 "육아기	
근로시간 단축"이라 한다)을	
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	
여야 한다. 다만, 대체인력 채	
용이 불가능한 경우, 정상적인	

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 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②・③ (생략)

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기간 이내로 한다.

⑤ ~ ⑦ (생 략)

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기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 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 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 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 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

· ②·③ (현행과 같음)
4
<u>2년</u>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4(육아휴직과 육아기 근
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 -
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 -
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) ①3회

- 의 기간은 <u>3개월</u>(근로계약기간 의 만료로 <u>3개월</u> 이상 근로시 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 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) 이상 이 되어야 한다.
- 제19조의5(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) ① 사업주는 만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 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~ 4. (생 략)
 - ② (생 략)
- 제20조(일·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) ① (생 략)
 - ② <u>국가는</u> 소속 근로자의 일·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<u>1개월</u>
<u>1개월</u>
제19조의5(육아지원을 위한 그
밖의 조치) ① <u>12</u>
<u>세</u> <u>6</u> 학년-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 제20조(일·가정의 양립을 위한
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